

「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월 8일

나. 발 의 자: 추은희, 강승수, 김민성, 김영길, 김영태, 김재우,
박세채, 신용하, 이상호, 이정희, 이지연, 장미경,
허민근 의원(13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9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월 17일

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추 은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~제2조)
-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성 등(안 제3조~제4조)
-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(안 제5조~제6조)
-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(안 제7조~제8조)
-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심의(안 제9조~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,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-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실행계획의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
- 본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